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52호서식] <개정 2022. 6. 7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 (경유)

제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

- 1.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2.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납세자		성명(법인명)			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		
		상호 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-					
			주소(영업	업소)												
과세예정내역																
			귀속연도	. 과세표준	세율	과세예정 연월	7-1		지방세							
세목	과세대	상					8	계	산출		가산세		과시	과세사유	관련법령	
								711	세액		무신고/과소신3		납부지연			
										+						
										+						
	가산세 산출내역															
세목		가산세		구분	대상금액			세율			감면액 기		가산된 세액		관련법령	
계																

끝.

발 신 명 의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 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 직위(직	급) 서명		
협조자		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 일련	번호(시행일) 접	수	처리과명-연도별 9	일련번호(접수일)		
우	도로명주소		/ 홈페이지	주소			
전화번호	() 팩스번호	<u>v</u> ()	/ 공무원으	전자우편주소	/ 공개 구분		
					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		